

# 日帝下 水利組合設置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產米增殖計劃과 水利組合設置
- III. 水利組合設置의 性格
- IV. 総 合

## I. 問題의 提起

日帝資本主義가 무엇보다도 그의 事業遂行에 있어서 優先視한 問題는 土地收奪을 위한 土地調查事業이 있고 이어서 繼續化된 事業이 產米增殖計劃이었다. 產米增殖計劃의 推進은 韓日合併 以後 第一次 世界大戰을 겪게 되자 一般物價의 昂騰에 隨伴하여 드디어 한 때 米價의 暴騰을 봄으로써 거의 全國的으로擴散된 가운데 演出된 米騷動의 亂劇에 따른 食糧問題의 解消와 더불어 日本國內의 遊休資本의 活用 및 生產化를 위한 突破口側面에서 推進展開된 바 있다.

한편 產米增殖計劃은 水利事業推進에 따른 水利組合設置의 強權的인 作用 속에서 推進된 바 있었고 그것은 小農의 負擔을 加重케 하였으며 마침내는 自營農土의 拋棄 및 賣買事態에 依한 土地兼併과 農村階級分化의 促求的인 歷史的 契機로서 具體化된 바 있었던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本稿의 目的是 產米增殖計劃推進에 따른 水利組合設置에 관한 內容과 性格을 解明함으로써 產米增殖計劃에 관한 歷史的인 意義를 定立 宪明하려 함에 있다.

## II. 產米增殖計劃과 水利組合設置

日帝는 土地調查事業이 完遂되자 韓國을 그의 食糧供給地로 確保하기 위하여 곧 產米增殖計劃을樹立한 바 있었다. 日本의 農業은 本來 狹小한 農地 위에서 이루어진 零細農業이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있을 뿐만 아니라 1850年 以來의 急激한 人口增加는 그들의 農業生產만으로는 自體內의 食糧需要를 到底히 充當할 수 없었다. 즉 當時 日本의 米穀消費量은 年平均 6,500萬石이 있는 데 반하여 그 生產量은 年平均 5,800萬石에 不過하고 있었다<sup>(1)</sup>.

이리하여 日本은 食糧의 絶對量의 不足을 當時에 臺灣 및 其他의 外國으로부터 輸入해 들여오는 米穀으로 僅僅히 充當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食糧의 絶對量 不足은 完全히 解決할 수 없게 되어 1918年 8月에는 日本의 各地方에서 이른바 米騷動이 惹起되게 되었고 第1次 大戰中 極甚한 食糧難을 맞이한 獨逸의 經驗은 日本으로 하여금 食糧의 自給自足을 切實한 當面課題로 認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日帝는 1920年을 起點으로 이른바 產米增殖計劃을 樹立한 바 있다.

「1920년부터 施行된 產米增殖計劃은 1920年부터 15年間에 總工費 1億 6千 8百萬圓을 投下하여 42萬町步의 土地改良을 實施하여 9百 20萬石의 產米增殖을 圖謀하려는 것이었다. 當時 日本內地는 極甚한 食糧不足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每年 300萬石 내지 500萬石의 外國米를 輸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食糧問題의 解決은 당시 日本國民의 死活問題인 重要한 案件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內地에 있어서는 쌀의 增產에 많은 期待를 할 수 없었던 反面에 韓國은 灌溉設備가 매우 不完全하여 水田의 大部分은 天水에 依存하고 있었던 狀態이었으므로 水利事業을 施行함에 天與의 米產遍地로 되어 있었다.」<sup>(2)</sup>

「1920年 以後 15年間에 約 9百萬石의 精穀을 增收함에 目標를 두고 있었으며 그 增收分에 있어서 約 8百萬石을 對日輸出하려 함에 그 終局의 意圖가 있었다. 그러함에 있어서 日帝는 各處에 水利組合을 設置하는 以外에 開墾·干拓事業에 補助를 圖謀하였고 한편 品種改良이나 堆肥獎勵 및 適期播種 등 耕種技術改善에 廣汎히 注力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그 重點이 灌溉設施을 中心으로 한 土地改良事業에 있었다.」<sup>(3)</sup>

「日帝下 產米增殖計劃은 從來의 優良品種의 普及·自給肥料의 增施·其他의 耕種法改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大規模的인 灌溉改善 등의 土地改良을 手段으로 하여 產米增殖을 圖謀하려 함에 있었다. 왜냐하면 當時의 朝鮮에 있어서 米穀의 反當 收穫量은 日本의 約 折半에 不過한 狀態의 것이었고 그 原因은 農機具水準이 低位하고 있었다는 것, 耕種耕作法이 未備하고 있었다는 것에 基因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 最大原因是 灌溉設備에 依存하는 水利安全畠이 적고 大部分이 天然降雨에 依存하는 天水畠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產米增殖計劃은 農事改良 및 水利組合의 設立과 土地改良事業의 促進에 依해서 約 900萬石의 增收를

(1)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土地改良株式會社誌』, p. 22.

(2)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1935, p. 330.

(3)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高麗大 出版部, 1967, p. 230.

〈表 1〉 土地改良事業의 實績

(単位：百町歩、萬匁、%)

區 分	1926~29年 累計			1930~33年 累計			1934~37年 累計			總計(1926~37年累計)			
	計劃①	實績②	②/①	計劃③	實績④	④/③	計劃⑤	實績⑥	⑥/⑤	計劃⑦	實績⑧	⑧/⑦	
施 行 面 積	着 工 竣 工	1,082 800	1,140 449	105 56	1,134 1,086	401 926	35 85	1,284 1,124	79 163	6 15	3,500 3,010	1,620 1,538	46 51
事業資金	國庫補助金 企業調達資金 政府斡旋資金 計	1,732 1,003 5,417 8,151	1,181 342 4,228 5,752	68 34 78 72	2,061 502 6,334 8,896	1,580 941 3,569 6,070	77 187 56 68	2,109 536 6,426 9,071	874 423 571 1,867	41 79 918 2126	5,902 2,040 18,176 118	3,635 1,706 8,368 13,709	62 84 46 52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編，『朝鮮產米增殖計劃の實績』，1937年版。

〈表 2〉 水利組合設置의 推移

(単位：個、町歩)

年 度	組 合 數	灌 溼 面 積	1組合當灌溉面積
1908~19	16	30,680	1,917.5
1920~25	51	72,453	1,420.0
1925~31	124	101,205	816.1
1933	187	216,766	1,159.1
1940(末)	300	253,484	844.9
1941(末)	373	292,167	783.2
1942(末)	428	305,521	713.8

資料：日本 農林省 热帶農業研究センター編，『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1976。

圖謀하며 그 가운데 約 460萬石의 輸移出의 增大를 期하려 함에 있었다.」<sup>(4)</sup>

위에서 產米增殖計劃은 土地改良事業을 前面에 앞세우고 推進 展開된 農業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土地改良事業의 實績內容에서 그 政策方向과 性格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1926年~1929년의 產米增殖計劃의 第二期 該當計劃에 있어서 土地改良實績을 보면 計劃을 上廻한 105%의 實績擧揚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點에서 產米增殖計劃에 關聯된 土地改良事業의 重要性과 이로부터 나타나게 된 水利組合設置의 意義 및 性格을 알 수 있게 된다.

勿論 1930~1933년의 土地改良事業實績이 35%에 그쳐 있고 1934年~1937年에 있어서는 6%에 不過하였다는 事實에서 土地改良事業의 低調性 및 不振性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原因에 대하여 昭和恐慌期의 大豐作과 米價低落에 依해서 그리고 水利組合設置의 經營惡化에 비롯된 바 있다고 指摘된 事實을 堪案하여 볼 때 產米增殖計劃의

(4) 河合和男，「朝鮮產米增殖計劃と植民地農業の展開」，『朝鮮史叢』，第2號，1979.12，pp.7~8。

矛盾은水利組合設置에 따른 運營面에서 露出되기始作하였다고 볼 수 있다.

產米增殖計劃以後 總督府는 地主에게 補助金을 賦與하여 水利事業을 施行하려 하였던 것이나 以後 6年間에 9萬餘町步의 土地改良을 施行함에 그쳤기 때문에 1926年 새로이 產米增殖更新計劃이樹立되어 總督府와 東洋拓殖株式會社에 土地改良部를 增設하고 또한 工事代行機關으로서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를 設置하여 土地改良에 대한 體制를 整備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水利組合의 設置는 具體的으로 이룩된 바 있었다(表 2 參照).

### III. 水利組合設置의 性格

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置는 統監府 設置後 1906年(光武 10年)의 水利組合條例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그 後 1907年 朝鮮水利組合令, 1927年의 朝鮮水利組合令의 改正으로 1934年 10月末 現在 全國에 196個의 組合이 地區數 202에 事業面積 207,380町步에 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水利組合設置에 따른 水利組合費는 水利組合 蒙利區域內에 있는 경우 法規上 組合員 또는 地主의 負擔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小作人 負擔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水利組合費의 地主 및 小作人相互 分擔은 施設의 결과에 따른 收益의 增大時에만 行하고 있었다.

一般的으로 定租法일 때에는 小作人이, 打租 및 執租法인 경우에는 相互 分擔하지만 一方的으로 小作人이 全擔하는 예가 많았다. 用水料를 小作人에게 全擔시킬 때는 高率小作料인 경우가 大部分이 있고 水利組合費는 水利組合令의 發表 以後 大量의 水利組合이 建設됨에 따라서 地主·小作人の 之间的衝突로 나타나게 되었다.

道別로 본 用水料 및 水利組合費의 小作人 負擔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京畿道地域. 이 地域에서 定租法인 경우는 小作人이 負擔하며 기타는 相互共同으로 負擔한다. 水利組合費는 小作人이 負擔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忠淸道地域. 이 地域에서 水利組合費는 地主가 負擔하며 灌溉에 필요한 經費와 勞役은 小作人이 擔當한다.

세째, 全羅北道地域. 이 地域에서 水利組合費는 地主가 負擔하고 水路修繕은 小作人이 勞務을 擔當하고 堤堰, 淹費, 小修理 및 凌渫은 小作人이 한다.

네째, 全羅南道地域. 이 地域에서 水利組合 및 堤堰契 등을 많이 가진 地主로 構成하여 經費를 地主가 負擔하거나 一部는 小作人에게 轉嫁시킨다.

(5)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30, pp. 230~235.

다섯째, 慶尙北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水利組合費 全額을 地主가 負擔하도록 한다.

여섯째, 慶尙南道地域. 이 地域에서 水利組合費는 地方에 따라 半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地主 負擔으로 하여 小作料에 이를 按配 決定시킨다.

일곱째, 黃海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定租時는 小作人이, 打租時에는 地主가 全額을 負擔하거나 相互 半擔한다.

여덟째, 平安南道地域. 이 地域은 黃海道와 같이 定租時에는 小作人이, 打租時에는 地主가 全額을 負擔하거나 相互 半擔한다.

아홉째, 平安北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水利組合費는 地主 및 小作人이 相互 平等하게 負擔한다.

열번째, 江原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小作人 혹은 地主 單獨으로 全額 負擔하거나 共同 負擔하며 定租法인 경우는 小作人이 全額 負擔한다.

열한번째, 咸鏡南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水利組合費는 全額을 一但 地主가 負擔한다.

열두번째, 咸鏡北道地域. 이 地域에서는 水利組合費는 地主가 全額을 負擔하는 代身에 小作料를 增徵한다.

한편 水利組合의 設置問題에 있어서도 地主들은 水利利用에 利益이 없다는 것을 理由로 水稅不納을 同盟하였으며<sup>(6)</sup> 대개 이런 경우는 全額을 小作人에게 轉嫁시킴으로써 物議를 激起하게 되었던 것이다.<sup>(7)</sup> 水利組合 建設上 필요한 諸經費 역시 小作人에게 負擔시킴으로써 小作人們이 水利組合의 測量을 拒否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sup> 그 밖에도 淹稅 또한 同類로서 水路의 수선은 하지 않은 채 過重한 淹稅만을 徵收하므로 農民의 負擔을 過重하게 하였다.<sup>(9)</sup>

水利組合의 設置에 따라 蒙利土地는 거의 大土地所有이거나 혹은 企業農의 所有가 되었으며 이와 反對로 貯水池建設로 인한 埋沒地域에 있어서는 一般農民 및 中小地主階層의 많은 所有地가 喪失되게 되는例가 상당히 增加되고 있다.<sup>(10)</sup> 또한 水稅의 決定은 大概 組合側이 一方的으로 處理하였기 때문에 그 割當比率은 適合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水利組合의 解散내지는 組合費不納을 決議하여<sup>(11)</sup> 小作人們이 猛烈하게 抗議하고 있었다. 특히 水利地區內에 있는 土地들은 水源이 풍부하여 水利의 惠澤이 필요

(6) 『東亞日報』, 1922年 5月 7日字 參照.

(7) 『東亞日報』, 1927年 10月 27, 28日字 및 1932年 1月 8日字 參照.

(8) 『東亞日報』, 1928年 6月 8日字 參照.

(9) 『東亞日報』, 1927年 11月 7日字 및 1928年 1月 31日字 參照.

(10) 『東亞日報』, 1928年 1月 19日字 및 2月 12日字 參照.

(11) 『朝鮮日報』, 1932年 1月 2日字 參照.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組合設置로 因한 水稅를 徵收하고 있었으므로 水利組合의 設置를 反對하거나<sup>(12)</sup> 혹은 水稅를 免稅해 줄 것을 組合側에 要請하고 있었다.<sup>(13)</sup> 또한 水稅를 地主가 全額 負擔하는 代身에 小作料를 增徵하는 例가 많았으므로<sup>(14)</sup> 小作人은 地主의 이려한 不當要求에 대해서 抗議하는 鬪爭까지도 展開되고 있었던 事態에 있었다.

水利組合의 設置目的은 灌溉排水 및 開墾·地目變換·土地改良에 있었던 것이나 水利組合設置를 위한 土地買收로 韓國의 地價는 더욱 謄貴하게 되어 있었고 韓國에 건설된 水利組合은 民度에 넘치는 負擔으로 小作人の 生活을 더욱 窮乏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또한 個人事業으로 許可되어 施行되고 있음으로써 많은 被害가 뒤따르고 있었다.<sup>(15)</sup> 따라서 地主들은 小作人과 結托하여 水利組合의 設置反對내지 土地不賣同盟을 맺어서 對抗하였다.<sup>(16)</sup>

勿論 水利組合은 農民들의 意思와 相關 없이 植民政策을 強化시키기 위한 農業政策의 一環으로 施行되었던 것이 事實이나 水稅의 決定에 있어서 組合側이 一方的으로 處理함으로써 問題가 提起되고 있었다.<sup>(17)</sup> 韓國에 建設된 水利組合 196個 가운데 말썽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sup>(18)</sup> 報導內容만 보더라도 水利組合의 設置問題 때문에 日帝當局과 農民間의 衝突 및 蔡藤이 많았던 것을 可히 推測할 수 있게 된다. 灌溉排水를 위한 水利施設의 工事 역시 地主의 許諾 없이 着工하여 地主들은 土地不賣同盟을 맺어 水利組合側에 對抗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는 要求不應時 警察權이 介入하는 등 不法的인 行事を 함으로써 強制의인 同意로 계속 進行되고 있었다.<sup>(19)</sup>

事實上 全體 計劃의 組合數 107個에 對해 不過 55%만이 成就되었다는 것은 水利組合設立 以後 農民의 窮乏이 稅金의 過重에서 비롯되었다<sup>(20)</sup>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는 點에서 우리가 注目할 對象이라 할 수 있다.

小作人們은 開畠地 水量不足問題<sup>(21)</sup> 그리고 水利組合設置로 인한 土地喪失 및 小作人の增加<sup>(22)</sup>, 短期的인 起債償還<sup>(23)</sup>, 水利組合設置 後 浸水地域에서의 農民의 移轉料問題,<sup>(24)</sup>

(12) 『東亞日報』, 1922年 5月 7日字 參照.

(13) 『東亞日報』, 1931年 1月 11日字 參照.

(14) 『東亞日報』, 1929年 3月 22日字 參照.

(15) 『東亞日報』, 1928年 6月 10日字 參照.

(16) 『東亞日報』, 1928年 4月 16日字 參照.

(17) 『東亞日報』, 1928年 1月 8日字 參照.

(18) 『東亞日報』, 1928年 3月 30日字 參照.

(19) 『東亞日報』, 1928年 3月 15日字 參照.

(20) 『東亞日報』, 1928年 3月 7日字 參照.

(21) 『東亞日報』, 1932年 5月 21日字 參照.

(22) 『東亞日報』, 1939年 4月 6日字 參照.

(23) 起債償還年度를 20年에서 60년으로 延長할 것을 要求하는 新聞記錄은 『東亞日報』 1927年 2月 7日字부터 1931年 4月 30일자까지 모두 35回가 있었다.

(24) 『東亞日報』, 1929年 5月 19日字 參照.

〈表 3〉 各道別 水利組合設置計劃 및 組織成果

(單位：個)

道 別	計 劃	達組合	未達組合	道 別	計 劃	達組合	未達組合
경 기 도	11	3	8	황 해 도	2	1	6
충 청 북 도	7	1	6	평 안 남 도	6	4	2
충 청 남 도	10	5	5	평 안 북 도	11	11	—
전 라 북 도	8	6	2	강 원 도	8	3	5
전 라 남 도	7	3	4	합 경 남 도	6	5	1
경 상 북 도	4	2	2	합 경 북 도	5	2	3
경 상 남 도	18	9	9	합 계	107	54	53

資料：『東亞日報』，1931年 3月 22日字에서 발췌 작성.

土地買收 後 代金의 未支拂<sup>(25)</sup> 등을 理由로 하여 水利組合의 設置反對<sup>(26)</sup>내지는 解散・廢止<sup>(27)</sup>를 水利組合側 또는 總督府에 陳情하였던 것이다.

水利組合의 設置反對의 理由는 組合費의 起債償還延長要求, 水稅의 引下, 浸水家屋의 移轉料支給 및 土地買入의 強制同意가 主된 것이었다.<sup>(28)</sup> 水利組合設置 以後에 賦課되는 過多한 水稅를 未納乃至 不納하는 土地에 대하여서는 差押하여 賣却 處分하는 事例<sup>(29)</sup>가 자주 發生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小作權의 移動도 甚하여 了으로 小作人은 地主와 結托하여 土地不賣<sup>(30)</sup> 및 水稅不納同盟을 맺게 하고 있었던 事態이었다.

위와 같은 原因으로 因하여 朝鮮總督府 土地改良部에서는 1928年의 水利組合 97個 認可를 計劃하기 위하여 事務를 簡素化하는 方法을 擇하게 되었고<sup>(31)</sup> 또한 水利組合側에 小作人の 要求를 貫徹하기 위해 差押을 中止하고 現行 水稅의 1/2納入만을 勸誘하기도 하였다.<sup>(32)</sup> 水利組合의 設置는 韓國人組合員의 意思와 相關 없이 監督官廳의 特別保護라는 名目下에 組合에 關係하는 日本人 및 個人이나 東拓 등의 营利團體에 利益을 주기 위하여 强行되었다. 그리하여 韓國人 小作農들은 水利組合의 測量을 拒否<sup>(33)</sup>함은 勿論이고 測量地域의 所有權主張<sup>(34)</sup>, 水利組合의 設置反對 및 解散・廢止를 要求하여 示威 抗爭하였다. 水利組合의 設置에서 비롯되는 각종 負擔金은 小作人에게로 轉嫁되었던 것이며 同時에 土地

(25) 『東亞日報』, 1928年 8月 7日字 參照.

(26) 『東亞日報』, 1928年 1月 18日字 參照.

(27) 『東亞日報』, 1928年 3月 22日부터 8月 31일까지 모두 11回에 걸쳐서 提議되었음.

(28) 『東亞日報』, 1932年 3月 5日字 및 『朝鮮日報』, 1932年 3月 29日字 參照.

(29) 『朝鮮日報』, 1932年 3月 5日字 參照.

(30) 『東亞日報』, 1927年 9月 18日字 參照.

(31) 『東亞日報』, 1928年 4月 7日字 參照.

(32) 『東亞日報』, 1931年 5月 7日字 參照.

(33) 『東亞日報』, 1928年 6月 9日字 參照.

(34) 『東亞日報』, 1926年 1月 14日字 및 1926年 8月 21日字 參照.

喪失로 인한 小作權의 移動, 小作契約의 取消 등은 小作人の 生計를 威脅하게 되는 것이 되어 있어 甚刻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堤堰・洑의 設置場所는 대개 耕作地와 거리가 멀어져 있었으므로 水稅를 徵收할 경우 堤堰・洑의 所有者 혹은 用水料 受納者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었지만 用水料를 小作人에게 轉嫁시키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地主・小作人 共同으로 負擔하고 있었다. 이것을 設置할 때도 堤堰契・洑契 등이 있었으며 契則에 의해 契員이 負擔하도록 되어 있었다. 用水의 使用은 耕作地와 함께 小作人이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補修設備도 小作人에게 責任을 轉嫁시키고 있었다.

灌溉防排水의 設置도 元泉에서 支線水路에 이르기까지의 水路改設, 揚水 및 防排水를 위한 堤防構築 등 小規模의 工事는 小作人負擔으로 하고 있었으며 大規模의 工事로 經費가 所要될 때는 地主가 費用을 提供하고 小作人은 勞役만을 擔當하였지만 實際的으로는 小作人이 이를 全的으로 專擔하는 現狀에 있었다.

위와 같이 產米增殖計劃推進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水利事業施行에 있어서 土地工事 및 堤堰・洑의 設備, 灌溉防排水施設에 대한 經費를 小作人이 負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施設을 위한 小作人の 加重한 勞役奉仕 등이 農事活動을 制約하고 있었으며 小作人の 生活을 더욱 窮乏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結果는 農民經濟의 惡化를 招來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農民層分解를 促求하게 하는 契機가 되었는 바 이는 다음의 農民層分解에 관한 〈表 4〉에서 證明되고 있다.

產米增殖計劃에 따른 水利事業施行과 設置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歷史的인 結果 및 性格은 朝鮮의 農民層의 經營條件의 極端의인 惡化와 地主經濟의 強化로 나타나게 되었다는事實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첫째, 1920年代 前半까지에는 小作地는 緩慢한 것이기는 하지만 面積規模에 있어서나 構成比率에 있어서 다 같이 減小하고 있음에 反하여 1920年代 後半 以後부터는 增加로 轉換되고 있다. 즉 地主에게 對한 土地集中現象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둘째, 農家階級構成에 關하여서는 地主甲(不耕作地主)이 始終一貫하게 增大하고 있음에 反하여 地主乙(手作地主)는 1920年代 後半 以後부터 減小로 나타나 이에 地主乙(手作地主)로부터 地主甲(不耕作地主)에로의 變化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어서 1920年代 中半부터는 自小作農이 減小되고 있는 가운데 自作農은 戶數規模 및 構成比率의 變化가 다같이 緩慢한 減少로 나타나게 되었거나 反對로 增大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1920年代 後半 以後로 逐年에 따라 自作農의 没落이 決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表 4〉 農民層分解에 관한 概括表

年 度	耕 地 面 積 ① (町步)	小 作 地 面 積 ② (町步)	②/① (%)	農 家 戶 數 (戶)	農家 1 戶當耕地面積(町步)		
					自 作 地	小 作 地	計
1916	3,589,503 (83.1)	1,914,548 (87.2)	53.3	2,641,154 (97.1)	0.634	0.725	1,359 (85.6)
1918	4,342,091 (100.5)	2,189,587 (99.7)	50.4	2,652,484 (97.5)	0.812	0.825	1,637 (103.1)
1920	4,322,035 (100.0)	2,195,145 (100.0)	50.8	2,720,819 (100.0)	0.781	0.807	1,588 (100.0)
1922	4,317,318 (99.9)	2,183,086 (99.5)	50.6	2,712,465 (99.7)	0.786	0.806	1,592 (100.3)
1924	4,322,205 (100.0)	2,181,920 (99.4)	50.5	2,704,272 (99.4)	0.792	0.807	1,599 (100.7)
1926	4,378,956 (101.3)	2,222,063 (101.2)	50.7	2,753,497 (101.2)	0.784	0.807	1,591 (100.7)
1928	4,391,395 (101.6)	2,377,451 (108.3)	54.1	2,799,188 (102.9)	0.720	0.849	1,569 (98.8)
1930	4,388,665 (101.5)	2,439,736 (111.1)	55.6	2,869,957 (105.5)	0.679	0.851	1,530 (96.3)
1932	4,390,443 (101.6)	2,481,905 (113.1)	56.2	2,931,088 (107.7)	0.651	0.847	1,498 (94.3)

  

年 度	地 主 甲 (%)	地 主 乙 (%)	自 作 農 (%)	自 小 作 農 (%)	小 作 農 (%)	火 囚 民 (%)	兼 著 農 家 (%)
1916	0.6 (103.3)	1.9 (66.8)	20.1 (100.2)	40.6 (105.5)	36.8 (89.7)	—	14.9
1918	0.6 (101.1)	2.5 (87.3)	19.7 (98.9)	39.4 (102.6)	37.8 (92.7)	—	17.0
1920	0.6 (100.0)	2.8 (100.0)	19.4 (100.0)	37.4 (100.0)	39.8 (100.0)	—	17.1
1922	0.6 (110.2)	3.1 (108.7)	19.7 (101.1)	35.8 (95.5)	40.8 (102.2)	—	17.2
1924	0.7 (119.9)	3.1 (100.8)	19.4 (99.3)	34.6 (91.8)	42.2 (105.5)	—	17.5
1926	0.8 (132.2)	3.1 (111.5)	19.1 (99.4)	32.4 (88.0)	43.3 (116.2)	1.3	16.8
1928	0.7 (133.5)	3.0 (111.2)	18.3 (96.6)	31.9 (87.9)	44.9 (116.0)	1.2	12.8
1930	0.7 (137.5)	2.9 (109.6)	17.6 (95.2)	31.0 (87.5)	46.5 (123.2)	1.3	11.6
1932	1.1 (211.3)	2.4 (95.5)	16.3 (90.0)	25.4 (73.0)	52.7 (142.8)	2.1	6.7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編，『朝鮮小作年報』，1937，pp. 121~122。

小早川九郎編著，『補訂 朝鮮農業發達史・資料編』，友邦協會，1960，p. 91。

註：(1) 地主甲이란 自家耕作을 全的으로 行하고 있지 않는 地主를 말함。

(2) 地主乙이란 一部를 自家耕作하는 地主를 말함。

(3) ( )내는 1920年=100으로 한 指數。

세째, 農家戶當 耕地面積에 관하여 1920年代 後半 以後부터서는 小作地가 增加하고 있는 반하여 自作地는 減少하게 되어 그 結果 全體로서 耕作面積이 減少로 나타나고 있다는

〈表 5〉民族別 土地所有

(單位：名)

年度	200町步 以上		200~100町步		100~50町步		50~10町步		10~5町步		總 計	
	韓國人	日本人	韓國人	日本人	韓國人	日本人	韓國人	日本人	韓國人	日本人	韓國人	日本人
1921	3,418,540 (100)	44,378 (100)	66 (100)	169 (100)	360 (100)	321 (100)	1,650 (100)	519 (100)	44,084 (100)	2,964 (100)	111,328 (100)	2,555 (100)
1924	3,572,536 (105)	57,163 (129)	48 (73)	167 (99)	344 (96)	360 (112)	1,507 (91)	659 (127)	43,657 (99)	4,095 (138)	116,482 (105)	3,370 (146)
1927	3,802,090 (111)	65,922 (149)	45 (68)	192 (114)	290 (81)	361 (112)	1,617 (98)	683 (132)	47,304 (107)	4,738 (160)	118,229 (106)	4,454 (174)
1930	3,975,350 (116)	93,067 (210)	50 (76)	187 (111)	304 (84)	361 (112)	1,566 (95)	676 (130)	46,173 (105)	5,278 (178)	125,491 (113)	5,451 (213)
1933	4,106,703 (120)	109,931 (243)	43 (65)	192 (114)	308 (86)	406 (126)	1,581 (96)	776 (150)	43,844 (99)	5,979 (202)	108,871 (98)	6,451 (252)

資料：小早川九郎編著，『朝鮮農業發達史 資料編』，1941，p. 94。

事實에서 뚜렷하다.

끝으로 兼業農家가 1920年代 中半期를 頂點으로 하여 그 以後부터 急激하게 減小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

그리고 產業增殖計劃의 推進展開에 따른 水利事業施行과 設置의 結果로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地主經濟의 強化와 土地兼併에 依한 大地主形成으로 集約되어 있다. 大地主會形成과 地主經濟의 成長發展은 〈表 5〉의 民族別 地主의 構成關係와 年度別 增加趨勢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地主經濟의 形成 強化는 農民支配의 地主強化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具體的으로는 農民耕作權의 不安定化로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強化는 또한 新興地主를 主軸으로 하는 地主層에 依한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殖民地支配의 社會經濟的인 支柱로 構築하여 地主層에 依한 韓國의 植民地的인 從屬經濟화의 強化에 拍車를 加하는 契機로 作用하게 되었다는 事實에 注目을 傾注하여야 함과 同時に 地主經濟의 形成發展成長이 農民層分化의 促求過程에서 이룩되었다는 點에 注目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產業增殖計劃의 樹立推進에 의한 水利組合設置가 갖는 歷史的인 性格이나 意義는 위의 内容檢討에서 어느 程度 正確하게 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나 이에 좀더 具體的인 内容側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產業增殖計劃은 事業自體의 力點이 土地改良에 있었고 또한 土地改良은 水利施設의 改善과 그 運營을 위한 水利組合設置에 있었거니와 水利組合設置에 의한 組合費負擔과 1930年代 以後의 農業恐慌으로 穀價가 大暴落한 結果는 農民으로 하여금 土地放賣를 促求케 하였으며 中小地主의 没落을 促進하여 大地主의 所有集中化를 낳게 되었다. 資本力이 貧弱한

自作農이나 中小地主는 長期에 걸쳐서 水利組合費를 擔當할 수 없었으므로 土地를 放賣하게 되어 水利組合 區域內에서는 土地價格은 急落케 되었다. 이를 利用하여 日本人과 一部韓國人 地主들은 廉價로 土地를 買收하여 土地의 兼併集中을 急速化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地主들은 組合費를 小作人에게 轉嫁케 하는 現象마저 있어 小作農民들의 經濟狀態는 極度로 惡化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產米增殖計劃은 產米增殖의 增產效果보다 오히려 어느 面에서는 農村의 階級分化를 促進케 하는 結果를 招來시킨 바 있었다.]<sup>(35)</sup>

「產米增殖計劃의 日帝에 對한 意義는 分明하다. 그러면 이 計劃의 實施는 朝鮮農民에 對하여 어떤 影響을 주었는가. 이 點에 關한 것을 結論的으로 말하면 이 計劃의 遂行이 朝鮮農民의 土地喪失, 日本人 및 大地主에의 土地集中을 促進하였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產米增殖計劃의 內容은 土地改良에 의한 增米計劃이고 그 土地改良은 水利組合의 設置에 달려 있었던 것인데 水利組合에 의한 組合費負擔의 苦痛 즉 1930年代 以後의 農業恐慌으로 穀價는 大暴落을 하였으나 組合費만은 從前 그대로이었다는 組合費負擔의 加重性은 結局 組合員農民의 土地放賣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組合員農民이 내어 놓는 土地는 結局 日本人 및 大地主의 手中으로 集中케 되었으며 그 見本的인 實例는 다음 表에 反映되어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產米增殖計劃의 實施는 韓國農民에게 何等의 利益이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有害한 作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計劃遂行에 投下된 巨額의 低利資金은 日帝의 遊休資本에 利潤獲得의 機會를 提供하였던 것이다. 그 利潤의 根源은 結局 組合員農民의 畏와 땀에 있었고豫想된 增米의 利益은 米價暴落으로 말미암아豫想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結局 日帝의 資本과 日人 및 朝鮮人の 大地主들만이 惠澤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產米增殖計劃의 總括的 結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sup>(36)</sup>

「產米增殖計劃樹立에 따른 水利組合事業計劃에 의한 收支概算表에 依하면 300個組合을 平均하여 水利區域內는 一反步當 平均 1石 7斗 1斤의 增收가 있어 粮 1石當 價格을 9圓 75錢으로 計算하면 金肥其他支出 1圓 46錢, 組合費 5圓 69錢을 負擔하고도 地主는 結局 反步當

〈表 6〉 全北五個水利組合(沃溝西部, 監益, 古阜, 全益, 益沃)에 있어서의 土地集中狀況 (單位:町)

年 度	日 本 人		韓 國 人		其 他		總 計	
	人員數	土地面積	人員數	土地面積	人員數	土地面積	人員數	土地面積
1 9 2 0	417	5,674	3,141	4,181	25	2,694	3,933	14,685
1 9 3 1	828	8,998	2,960	3,545	71	7,292	3,859	19,826

資料：金錫淡外 2人 共著,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 協同文庫, 1947, p. 35.

(35) 朱奉圭, 『韓國農業經濟史研究』, 先進文化社, 1980, pp. 160~161.

(36) 全錫淡, 李基洙, 金漢周 共著, 『日帝下의 朝鮮社會經濟史』, 協同文庫, 1947, pp. 95~96.

1圓 94錢의 純利益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注意할 바는 300個의 組合 가운데 그들의 發表에 依해서도 47個組合은 組合費의 過重으로 말미암아 地主는 아무런 利益도 損害도 없었다는 點이다. 利益도 損害도 없는 일을 그들은 強制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穀價가豫想價格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低落될 때에도 組合費만은 固定不變이었다. 여기에서 產米增殖計劃에 있어서의 日本의 罪惡相을明白히 볼 수 있다. 草創期에 있어서는 물론 最近에 이르기까지 水組區域內는 收支가 맞지 않았다. 이 까닭에 各地에서 水利組合設置反對運動이 일어났고 또한 水利組合內의 土地價格은 急激하게 低落되어 結局 日本人 및 一部地主에게 急激히 土地가 集中兼併되는 結果를 招來하고 말았다. 朝鮮의 水組歷史는 참으로 銃劍의 強制와 血淚의 服從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水利組合이 設置되자 地主는 組合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小作人에게 轉嫁시켰다. 이 까닭에 朝鮮의 中小地主, 自作農의 没落이 促進되었을 뿐만 아니라 小作農自身도 더욱 悲慘한 狀態로 빠져 들어 가고 있었다.」<sup>(37)</sup>

「產米增殖計劃의 樹立推進의 手段으로서의 水利組合은 日本에 있어서 耕地整理組合과 거의 그의 性質 및 機能을 같이 한 것으로서 關係區域內의 耕地所有者의 一定數의贊成을 얻어서 強制的으로 全區域에 對하여 成立한 것으로서 組合의 水利施設에 의해서 利益을 받는 土地所有者로부터 強制的으로 組合費를 徵收하는 權利 및 國家로부터 補助金을 受惠받을 權利를 享有하고 있었다. 그러나 地主는 水利事業에 關心을 갖지 않고 當當時에 地價는 低廉하고 小作料는 高率이 있으므로 地主는 土地의 質的 向上側面보다는 量的인 擴大側面에 血眼이 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水利組合設置는 日本人地主의 利益에 最大奉仕의 對象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水利組合設置가 日本人이 進出되어진 地域에 集中되고 있었다는 事實에서

〈表 7〉 水利組合과 日本人所有農地의 分布 (單位: 町步, %)

道別	水利組合灌漑面積		日本人所有農地面積	
	實數	比率	實數	比率
京畿	11,237	9	16,561	8
忠北	2,231	2	758	0
忠南	12,077	11	27,403	14
全北	44,374	38	62,502	31
全南	10,796	9	64,423	32
慶北	8,371	7	1,693	1
慶南	21,124	18	28,621	14
江原	7,193	6	182	0
總計	117,403	100	202,143	100

資料：飯沼二郎，「日帝下朝鮮における農業革命」，『朝鮮史叢』，第5.6合併號，1982.1, p.141.

(37) 全錫淡, 李基洙, 金漢周 共著, 前揭書, pp.150~151.

〈表 8〉 水利組合所有面積別 組合員數 (単位: 名, 町歩, %)

規 模 別	日 本 人(實數)		韓 國 人(實數)		日本 人(比率)		韓 國 人(比率)	
	人 數	面 積	人 數	面 積	人 數	面 積	人 數	面 積
5反未滿	1,593	430.53	40,366	9,779.28	27.7	0.9	49.7	9.7
1町未滿	1,000	760.71	19,335	13,904.78	17.4	1.5	23.8	13.9
10町未滿	2,580	8,762.83	20,408	49,738.37	44.9	17.0	25.1	49.5
50町未滿	437	9,284.68	1,035	19,955.66	7.6	18.0	1.3	19.9
100町未滿	67	15,211.29	60	3,993.56	1.2	10.1	0.1	4.0
100町以上	72	27,049.20	16	3,015.25	1.2	52.5	—	3.0
計	5,749	51,499.24	81,220	100,385.90	100.0	100.0	100.0	100.0

資料：飯沼二郎，「日帝下朝鮮における農業革命」，『朝鮮史叢』，第5.6合併號，1982.1, p.141.

明白하고(〈表 7〉 參照) 同時に 水利組合은 小數의 日本人地主가 多數의 韓國人小地主를 吸收하게 하였다는 事實에서 뚜렷하다.」<sup>(38)</sup>

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置는 統監府 設置後 1906年(光武 10年)의 水利組合條例에서 始作된 것이나 그 強權的인 普及施策은 小農의 負擔을 加重케 하고 드디어 自營農地를 拋棄케 하는 事態를 자아내게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特別한 水利施設이 구태여 要求되지 않는 區域內의 小農에 대하여 水稅뿐만 아니라 賦役·現品을 强要함에 있어서 그 不合理性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실로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水利組合事業推進과 그 設置는 朝鮮에 있어서 近代的 土地兼併에서 一種의 觸媒劑로 되어 있었다.」<sup>(39)</sup> 云々에서 뚜렷하다 할 수 있다.

「產米增殖計劃에 依한 水利事業의 進展에 隨伴하여 農民의 階級的 分化는 加一層 그 速度를 增大하게 함과 同時に 한편 週期的으로 襲來하는 農業恐慌의 波浪에 휩쓸려 大量的인 農民의 土地放賣가 頻繁하게 反復되고 있었다. 實로 이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 近代的인 土地兼併에의 하나의 觸媒劑가 되어 있었다는 點에 注目하여야 한다. 水利組合이 設置됨에 따라서 區域內의 小土地所有者는 水利組合費의 負擔重壓 때문에 마침내 没落의 深淵에 빠지게 되었으며 水利組合의 設立에 依해서 區域內에 있어서 地價의 低廉을 自招하게 되었고 이것은 마침내 土地兼併으로 擴散하게 됨으로써 大土地私有制가 南韓地方을 中心으로 顯著하게 進展되었다.」<sup>(40)</sup>

(38) 飯沼二郎，「日帝下朝鮮における農業革命」，『朝鮮史叢』，第5.6合併號，1982年1月，pp.140~142.

(39) 金俊輔，『農業經濟學序說』，高麗大出版部，1967, p. 231.

(40) 文間健一，『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西ヶ原刊行會，1935, p. 22.

#### IV. 総 合

첫째, 產米增殖計劃推進을 위한 水利組合의 設置는 韓國에 있어서 近代的인 土地兼併에의  
觸媒劑로 나타나고 그것은 結果的으로 地主經濟의 強化로서 나타나게 한 契機가 되었다.

둘째, 產米增殖計劃推進을 위한 水利組合의 設置는 組合費負擔의 加重性으로 因한 農民經濟의 窮乏化와 더불어 土地放賣現象을 自招하여 農民層分解를 促求하게 하는 契機가 되었다.